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3. 22 선고 2018가단53475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고주식회사 C

변론 종결 2019. 3. 8.

판결 선고 2019. 3. 2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91,304,978원 및 그 중 120,269,841원에 대하여 2018. 8. 17.부터 2018. 11. 12.까지는 연 9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피고가 주식회사 D와 상품매매 및 공급에 관한 기본계약을 체결할 때 원고는 피고와 이에 관한

이행(지급)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. 피고의 약정불이행에 따라 원고는 2014. 3. 4. D에 보험금 135,147,945원을 지급하였다. 그 후 원금 14,878,104원이 변제되어 남은 구상금 원금은 120,269,841원이며,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(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 연 6%, 그 후 60일까지 연 9%, 그 후 2015. 12. 31.까지 연 15%, 그 후 2018. 6. 30.까지 연 12%, 그 후 연 9%)에 따라 2018. 8. 16.까지 지연손해금 71,035,137원이 발생하였다(자백간주: 피고는 답변서에서 피고의 대표이사이자 연대보증인인 E 등이 면책결정 등을 받은 사실을 주장할 뿐 법인인 피고에 대한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은 명백히 다투지 않는다).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191,304,978원과 그 중 원금 120,269,84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판사항병헌